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67
----------	-------

발의연월일 : 2025. 7. 3.

발 의 자 : 정일영 · 허종식 · 남인순
허성무 · 최혁진 · 이재관
박희승 · 조계원 · 이훈기
이광희 · 최민희 · 송재봉
문대림 · 이기현 · 양부남
서영석 · 강준현 · 문금주
김교홍 · 전진숙 · 강득구
이재강 의원(22인)

제안이유

지난 10년 동안 국정농단, 내란 등 비정상적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는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이하 “기관장 등”)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경영목표가 자동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거버넌스 신뢰 훼손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맞춘 새로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신속히 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과 책임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조직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현장에서 즉시 구현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안 제28조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을 “단서, 제46조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관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 사변, 내란, 외환 또는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등에 따라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새

로운 정부의 정부정책방향 등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경영목표의 정부정책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2. 기관장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기관장·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방법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회는 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하여 재평가 후 운영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0. ----- --단서, 제46조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 ----- -----
11. ~ 17. (생략)	11. ~ 17.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다만, 위원의 임기 중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u>

③ ~ ⑥ (생략)
제28조(임기) ①·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단서 신설>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 ④ (생략)
<신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한 것으로 본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

----- 다만, 기관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 사변, 내란, 외환 또는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등에 따라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새로운 정부의 정부정책방향 등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요

<신 설>

<신 설>

구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경영목표의 정부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2. 기관장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

<u><신 설></u>	<u>능력 평가 결과</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신 설></u>	<u>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기관장·감사 및 감사위원회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u>
<u><신 설></u>	<u>⑨ 제7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방법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⑦ (생략)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⑧ 국회는 제7항에 따라 보고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u>
<u><신 설></u>	<u>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항에</u>

⑧ ~ ⑩ (생략)	<u>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하여 재평가 후 운영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⑩ ~ ⑫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	--